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389호 2013.12. 5 (목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2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09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6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3차) ····· 13
○ 하동군 고시 제2013-70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15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707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
○ 하동군 공고 제2013-708호 제2회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6
○ 하동군 공고 제2013-709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1
○ 하동군 공고 제2013-717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 51
○ 하동군 공고 제2013-721호 제2차 하동군 교통안전기본계획(안) 공람·공고 ····· 52
○ 하동군 공고 제2013-722호 지방세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공고 ····· 53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2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2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6% 이내	9%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1% 이내	89%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4% 이내	66% 이상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1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58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4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3년 12월 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9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17	263	68	48	9	23	13	21	172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586	259	68	23	9	23	11	21	172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5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직	6급 소계	156	78	12	7	2	3	3	7	44
	행정	14	13	1						
	세무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농업	28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3	12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5	2		1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3						1	1	1

구분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직	7급 소계	180	77	19	7	3	5	4	9	56
	행정	19	12			1		2	1	3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속기	2						2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4						2	14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구분	기관별 /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직	8급 소계	148	62	33	3	2		2	3	43
	행정	13	9					2		2
	세무	1	1							
	사회복지	8	2						1	5
	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환경	1	1							
	시설	8	4							4
	시설관리	3	3							
	운전	9	2		1					6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2	5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	3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열관리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구분	기관별 /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직	9급 소계	64	27	2	2	1	14		1	17
	행정	3	2				1			
	사회복지	10	4							6
	환경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	2						1	2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9	8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4					4			
	선박항해운영	1	1							
	보건운영	4					4			

구분	기관별 /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별정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구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동군 고시 제2013 - 6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3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2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120-1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387-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25-20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482-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120-1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66-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122-45	2007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497-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140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117-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211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산54-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구고속도로 193	20070702	기존 하동군 구고속도로와 사천시 후포로를 합쳐 구고속도로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12-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길목길 21	20080402	길목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산3-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소송양달길 98-1	20080402	소송의 양달편 위아래에 있는 마을로 옛지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254-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10	20090302	마을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26-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곡2길 55-20	20090302	구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21-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911	20090710	19번 국도의 일부로서, 섬진강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 지역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00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1길 75-4	20111025	사평 사드래와 양막골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하동군고시 제2013 - 70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하 동 군 수

□ 신설 도근점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2976	금남면 대송리	164406.31	277431.00		
2977	금남면 대송리	164496.65	277580.37		
2978	금남면 대송리	164544.64	277761.23		
2979	금남면 대송리	164575.25	277845.74		
2980	금남면 대송리	164607.08	278059.64		
2981	금남면 대송리	164597.62	278188.65		
2982	금남면 대송리	164665.46	278292.55		
2983	금남면 대송리	164787.73	278325.69		

2984	금남면 대송리	164799.93	278360.29		
2985	금남면 대송리	164863.49	278505.75		
2986	금남면 대송리	164856.26	278579.56		
2987	금남면 대송리	164869.01	278668.11		
2988	금남면 대송리	164836.74	278844.69		
2989	금남면 대송리	164883.33	278925.41		
2990	금남면 대송리	164853.05	278988.93		
2991	금남면 대송리	164901.11	279066.43		
2992	금남면 대송리	164847.08	279215.29		
2993	금남면 대치리	164771.43	279253.68		
2994	금남면 대치리	164705.39	279419.91		
2995	금남면 대치리	164608.01	279599.09		
2996	금남면 대치리	164604.67	279740.20		
2997	금남면 대치리	164598.65	27987.39		
2998	금남면 대치리	164525.71	280007.91		
2999	금남면 대치리	164483.34	280150.29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055-880-2091)			
비 고		신 설			

□ 폐기 도근점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327	악양면 입석리	184398.12	263790.41		
336	악양면 입석리	184411.65	264005.12		
337	악양면 입석리	184408.02	263900.62		
967	진교면 진교리	169910.85	282428.76		
968	진교면 진교리	169945.26	282430.47		
972	진교면 진교리	170008.88	282505.83		
973	진교면 진교리	169957.73	282500.64		
1340	청암면 상이리	187434.18	270781.70		
1968	금성면 가덕리	163775.38	274168.77		
1969	금성면 가덕리	163672.71	274224.73		
2041	화개면 덕은리	186831.30	257456.90		
2772	횡천면 전대리	184613.63	275442.66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055-880-2091)			
비 고		망실 폐기분			

□ 복구 도근점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2255	옥종면 월횡리	188845.71	279360.00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055-880-2091)			
비 고		복구			

□ 신설 삼각보조점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보45	악양면 등촌리	189635.56	264811.03		
보46	악양면 동매리	187930.43	265336.17		
보47	악양면 정동리	185866.27	265499.60		
보48	악양면 매계리	186969.21	263866.66		
보49	악양면 정서리	186291.02	264330.48		
보50	악양면 정서리	185474.56	263541.39		
보51	악양면 신흥리	185337.14	265984.90		
보52	악양면 입석리	184579.29	264297.84		
보53	악양면 입석리	185357.80	263199.25		
보54	악양면 평사리	184415.98	262446.91		
보55	악양면 축지리	183442.74	263886.93		
보56	악양면 신성리	183378.02	265781.65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민원과 (055-880-2091)			
비 고		신 설			

하동군 공고 제2013-707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2. 제안 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하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한 물의 재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코자 함

3. 주요 골자

○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 삭제(중수도설치 및 관리)

○ 하동군 하수도조례 제29조 제1항 3(감면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55-880-2602, FAX 055-880-259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일자 : 2013. 11.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한 물의 재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 등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 삭제(중수도설치 및 관리)

나. 하동군 하수도조례 제29조(감면 등)의 3호~4호 재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 하수도법(2011.11.14. 일부개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6. 9.공포)
-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1.15.공포)

나. 신. 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합의 : 기획감사실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1. 22 ~ 12. 12 (20일이상)

나) 예고방법 : 신문게재, 군 홈페이지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 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삭 제〉

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도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삭 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色度), 혼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 군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 4. <삭 제>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7호

제2회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3년도 제2회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22.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학예연구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1명	• 문화재 및 향토유적 조사 · 연구 · 관리 • 문화재 발굴, 복원, 활용사업 추진 • 박물관(전시관) 관리 · 운영 • 섬진강권 및 지리산권 세계문화유산 지정	문화관광과

※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연령 ·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 2013년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2013년도 이전까지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라. 채용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학예연구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 민속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박물관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미술사학 ▸직무분야 : 문화재 보존관리,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지역문화 조사연구 관련 분야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3.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안행부 예규 제1호)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가.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봉급 한계표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결 정 액
"라" 급	42,552천원	30,352천원	신규채정시 하한액 적용

나. 제수당 별도 지급

5. 채용(계약)기간 : 2년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7. 시험일정(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자(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문화관광과 (학예연구)	2013.11.22 (금)	2013. 12. 3(화)~ 12. 5(목) ※기간중 업무시간내 (09:00~18:00)	2013.12.06 (금)	2013.12.09(월) ~ 12.10(화)	2013.12.11 (수)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http://hadong.go.kr/main/**

8. 응시원서 교부 ·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일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하동군 수입증지(하동군청 민원과 판매)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기준 유효한 것

○ 관련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 합산 결과)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
(http://hadong.go.kr/main)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을 취소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특히, 제출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 하동군 행정과(행정담당 ☎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람

응 시 원 서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분야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전화) (휴대폰)			

학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어학/자격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요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하동군 수입증지	귀도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출 원 인 (인)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표	성명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응시분야		
	주민등록번호					
	2013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이 력 서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세)
	한자		주민번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기재함

□ 학 력(대학이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명

□ 주요경력

기간	소 속	직 책	담당업무 등 기타

※ 재직기간, 직장명, 직위, 업무내용 등은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에 업무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작성함

☐ **석사학위 논문**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요지

☐ **박사학위 논문**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요지

※ 내용요지는 10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함

□ 그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게재서 (출판사)	연구자	연 구 연월일	내용요지

□ 수상경력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수상경위

□ 기술 및 자격증

구 분	종 류	취득일(시행일)	시행기관	비 고
자격증				
어학능력검증				점수
기 타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자 기 소 개 서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

2013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참고로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관련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교	학부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년도 졸업(석.박사)

1. 위 사람이 졸업한 우리대학(원)의 _____학과는 하동군인사위원회의 공고문에 게재된 _____학과(을 전공한 자)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전공 자)임을 확인하고

2. 하동군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한 _____채용분야 임용시험의 계약직 응시대상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대학교 연락처(전화) :

담당자 (직) 성 명 (서명)

2013. . .

학 과 장	날인
단과대학장	날인

대 학 교 총장 (직인)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증명서 뒷면]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 시에는 반드시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임용시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서식은 하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임용시험 응시희망자의 서류전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이 서류 작성 시에는 이수과목에 근거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편입학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문구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류는 추천요구 학생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고 총(학)장의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본 서류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류로 함께 사용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행정과(행정담당 ☎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제2회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3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하동군 공고 제709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 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 ~ 제21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과 통합지휘소 철수,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따른 인력 및 장비지원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안 제22조, 23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으로의 권한 위임(안 제24조)

4. 의견 제출 :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하동군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경남 하동군 군청로 23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5-880-2264 (FAX:055-880-22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안전총괄과장

1. 제정이유

○ '13. 8. 6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 ~ 제21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과 통합지휘소 철수,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따른 인력 및 장비지원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안 제22조, 23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으로의 권한 위임(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34조의5, 37조, 제39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기획감사실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의 장을 부군수로 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자연재난 관련 업무담당 실·과·소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과·소장(실·과·소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

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3 - 717호

공 고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 유어장 지정내역

지정번호	지정을 받을 자		유어장명	위 치	지정 면적 (ha)	지정기간	비고
	주 소	대표자 성 명					
제2013-9호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40-5	송문어촌계장 김 석 련	송문유료 낚시터	금남면 송문리 마을어장 11호내	3.4	2013. 11. 26 2014. 11. 26	

하동군 공고 제2013- 721호

「교통안전법」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하동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하 동 군 수

2013년 11월 29일

제2차 하동군 교통안전기본계획(안) 공람·공고

1. 공람대상 : 제2차 하동군 교통안전기본계획(안)
2. 과업개요
 o 계획기간 : 2012 ~2016(5년)
 o 계획의 성격 : 제2차 하동군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에 따른 지방계획
3. 주요내용 : 별첨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요약보고서 참조
4. 공람기간 : 2013. 11. 29 ~ 2013. 12. 13(14일간)
5. 공람도서 및 장소
 o 하동군 홈페이지(http://hadong.go.kr)에 게시
 o 하동군 건설교통과 계획서(안) 비치
6. 의견제출
 o 기 한 : 2013. 12. 13(금)
 o 기재사항
  -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서식(아래서식 또는 임의서식)

계획내용	수정안	사유(구체적으로)
		※ 필요시 자료 첨부

 o 보내실 곳
  - 주 소 : 667-805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건설교통과 (☎ 055-880-2392)
  - 전자 메일 : mjmahanaim@korea.kr
  - 전송(FAX) : 055) 880-2509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880-23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 2013 -722호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공매에 부치는 사항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배기량(톤)	매각예정가(원)	비고
1	51고3354	그랜져	2007	3778cc	6,500,000	
2	경남47나3129	스타렉스9인오토	2003	2497cc	1,500,000	

2. 공고등록 및 입찰등록기간 : 2013년 11월 29일 ~ 2013년 12월 9일(23:00)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은 등록마감일 까지

※ 입찰서작성 및 제출은 입찰기일 내 제출

3. 입찰장소 :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3년 12월 10일(화)(14:00), (주)태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5. 입찰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 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847-01-014832 (예금주:하동군수)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며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자동추점을 하여 낙 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 이내에 반환청구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재공매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 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7. 낙찰대금 납부

①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기타

①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공부열람 및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된 후 차량인수에 필요한 제반사항(배터리, 오일, 연료 등)을 낙찰자 본인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③ 매각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매체결전 인수 가능하며 국세징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는 취소됩니다.

④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등

-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 말소등록세(건당 7,500원)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차량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본인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장대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 개인사업장의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의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⑥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무과(055-880-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9일

하 동 군 수